

청·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필요입법의 협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5.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제시

(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관찰

인권위원회는 과거 정권 등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며, 기본적 임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이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수사업무 및 교정업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해야 하므로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조사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권위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맷음말

(1)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다시 상기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국가 정보원의 수사권 보유와 개인정보법·정보공개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예외조항은 정보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자감시의 문화를 형성케 할 우려가 있어 프라이버시 문제에 민감한 대상으로 남아 있다²⁶⁾는 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및전한정보통신질서화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관한 문제이다. 통신망의 질서화법이라는 이름하에 통신망을 겸멸하여 국민의 통신의 자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를 넘어 감시·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과 인터넷 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 과거 권위주의들은 정보기관을 통한 주민 통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6·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하얀색 '마을회관'의 엠프시설(확성기)을 통하여 국민을 감시·통제하였고,

26) 고영삼, 앞의 책, 96면.

80년대 전두환정권은 사회악(社會惡)을 일소하여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야심찬 목표 아래 설치한 '사회정회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지역과 직장·학교 등에서 공·사생활의 조사 및 밀고를 권장하여 감시·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 어느마을이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의 망이 짜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엠프시설에 의한 마이크와 라디오 중계는 국민통제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수단이었다. – 중간생략 – 각 동과 리의 장은 각 동리마다 마이크를 통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씩 호명하여, '아무개 어머니는 빨리 투표소로 나와서 표 찍으시오'하고 소리쳐 대고 있었다. '아무개 아버지 무엇을 하고 있소? 시간이 돼 가니 투표소로 나오시오. 나 이장 아무겐데 빨리 나오시오'하고 소리질러대니 서로가 감시하고 규제당하고 사는 마을생활에서 그러한 투표 강요에 대해 대개의 농촌 사람들은 그야말로 찬성 지지하는 표 찍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현실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²⁷⁾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혁명'은 정보유통의 혁신으로 시민 개개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져온 순기능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속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과 악용이라는 모습으로 현실사회에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의 부당성을 지나쳐서는 않된다. 경찰의 「전자지문감식기」의 도입은 범죄에 대응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전자지문체취와 지문의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마을회관이나 사회정화위원회를 통한 감시·통제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수단이 전자지문감식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3)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문제이다. 헌법 제17조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정보기관의 도·감청에 의하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범위를 대폭축소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 통신비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권력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감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통신감청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는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에

27) 한상범, 憲法原理의 脫憲法化 過程의 問題, 「행정논집」 제22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1994), 109면.

서 자신을 감청하고 잇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히,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공권력에 의한 통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적어도 긴급한 상황에서 감청을 시작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도를 고쳐야 할 것이다.²⁸⁾

(4) 헌법에서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을 독립된 조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대와 같이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각 개인이나 단체는 공권력이나 사적 단체로 부터 각종 방법 기술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집·보관·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⁹⁾ 따라서 현행 법제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한다. 가칭 「사생활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28) 김성천, [시민행동]통신감청제도를 뜯어고치자!

29) 한상범, 「人權 - 민중의 자유와 권리」, 교육과학사(1991), 76면.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인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 147~158

▷ II 분과 · 6일(10:00~10:50)

매춘여성의 인권

1. 매춘여성의 실태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매춘여성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매춘여성의 인권문제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매춘여성을 구조하고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가부장제의 대표적인 제도는 결혼이고, 결혼제도 안에는 '구타당하는 아내'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때 결혼제도의 폐지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학대당하는 아내들을 도울 수 있는 법률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략이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춘문제에도 이러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매춘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한국사회의

*새움터 대표

* 성애여의 국제화에 따라
작은 힘역, 국가인권기구간 협력의
증가.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우의 태도 변화 기대.
김현선*

일반적 인식과 법률은 이 여성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춘 여성들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법률의 문제점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냥고 있다. 매춘 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 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매춘으로 인한 낙인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 매춘집결지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많은 미성년 매춘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에게 적용하기 어려워서 다시 가출을 하고 매춘업소로 돌아갔으며, 심지어 부모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법률의 실효성 문제도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빚 문제이다. 매춘여성들이 업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이 업주에게 지고 있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빚이다. 이 빚의 대부분은 직업소 개소에서 매춘업소로 여성들을 소개하는 과정과 매춘업소간에 여성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개비의 명목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낙태비용, 의료비, 티켓비(일을 할 수 없는 날 내는 벌금) 등의 명목으로 발생 한다. 이들 모두 매춘과 연관한 불법적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빚을 갚지 않는 한 매춘여성들은 업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얼마 전 종암경찰서에서는 매춘여성들을 모아놓고 매춘으로 인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매춘으로 인한 채무관계는 무효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춘여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나. 범죄피해

많은 매춘여성들이 업주나 폭력배, 남성고객의 착취와 폭력,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해도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강하다. 매춘여성들은 경찰이 업주의 편이라고 불신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미군범죄도 심각하다. 매년 살해사건을 비롯한 많은 미군범죄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문제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들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 의료보험, 생활보호, 공공근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나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라. 외국인 매춘여성의 문제

국제관광법학(방문)
현재 전국적으로 기지촌의 매춘업소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많은 성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연변 등으로부터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런 현상은 관광 자원의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아시아 각국 정부의 지원과 뮤인을 통해 성산업이 점차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와 점차 심화되는 국가간의 빈부 격차가 국가간의 여성 매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으로 해외 이주 노동을 원하는 동남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은 한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인 해외 이주 노동의 장려와 값싼 노동력에 대한 국제적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노동력의 이주는, 여성 인신매매 알선자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한국의 매춘업소로 유입된 후 매춘 강요, 화대 갈취, 폭행, 감금 등의 학대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욱 소외당하고 있다.

마. 매춘여성의 자녀의 문제 - 혼혈아동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매춘지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은 유해한 환경에 방치

되어 있다. 매춘집결지역은 성폭력 및 구타, 강도, 살인과 같은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범지역이다. 일하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에 이러한 지역을 돌아다니는 어린 아동들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매춘여성
시대 이전**

특히 혼혈아동들은 자신의 피부색과 어머니의 직업, 그리고 기지촌의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따돌림당하는 아동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을 포기하게 되어 어머니의 빈곤이 아동들에게 악순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직업을 갖거나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혼혈인들은 범죄자가 되거나 다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 전일의 싸우 미국에 혼혈아동
'혼혈아동'이라는 용어는 혼혈여성이

또한, 최근 들어 외국인 매춘여성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은 무국적자로서 교육은 물론이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극도로 소외된 상태에 놓여있다.

여론여성을 부리고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 유형 및 사례

가. 미군에 의한 기지촌 매춘여성 살해사건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냈던 1992년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에도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군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기순씨, 허주연씨, 신차금씨 등 매년 미군에 의해 기지촌여성들이 살해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올해에도 2명의 기지촌 여성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 1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미군전용클럽인 '뉴아마존'에서 이 클럽에서 일하는 김성희씨(32세)가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김씨는 클럽 업주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으며, 미8군 범죄수사대는 21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경기도 파주시 캠프 게리 오웬 소속 크리스토퍼 메카시 상병(22세)을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자백하였다. 범인은 구형량보다 훨씬 적은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범인이 잡히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미궁에 빠지며 용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미국으로 송환되곤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다.

이 사건의 수사가 채 종결되기도 전인 3월 11일 오후 2시 50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의 캠프 스탠리 인근 기지촌 지역에서 서정만씨(68세)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서씨는 온 몸에 명이 들어 있었고 앞니 2개가 빠진 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폭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서씨는 전날 밤 11시 50분경 미군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으며, 곧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서씨는 한국 전쟁 당시 가족들과 헤어져 기지촌에서 매춘을 하며 힘겹게 혼자 살아왔으며, 어릴 때 궂병을 앓은 뒤 말을 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이 사건은 폭격자가 있었고 범인의 몽타주 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 미군이 유력한 혐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처럼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궁에 빠졌으며 용의자였던 미군은 지금 기지촌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한국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한국 경찰은 불평등한 SOFA협정에 의해 한국경찰의 수사권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 기술원방화사건

정부는 지금까지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단속을 통한 '시설수용보호' 대책을 시행해 왔다. 매춘여성들에 대한 그간의 대규모 시설수용의 문제점은 시설보호의 비인도성과 시설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자활의 기본 요소인 일상적인 생활 유지의 불가능 등이다. 경기도 내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시설수용은 1995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모두 37명의 여성들이 사망한 이 사건은 기술원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항의하는 여성들이 숙소에 불을 지르자, 원생들의 탈출을 우려해 기술원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발생하였다. 그 당시 이 기술원은 정부로부터 매년 11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원생들에게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철책과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감시하였다. 마치 교도소처럼 원생들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일상적인 체벌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 외국인 매춘여성들의 고발사건

지난해 동두천의 기지촌 업소에서 일을 하던 필리핀 여성 2명이 업소로부터 탈출하여 클럽 업주와 브로커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 여성들

의 인권침해 실태와 이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세력이 한국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당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용산 경찰서는 22일 외국인 여성을 국내 유흥업소에 위장취업시킨 경기도 도의회 의원 김경수(60·경기 동두천시)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력 송출업자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안모(4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특수관광협회 회장인 김경수씨는 인력송출 브로커들과 짜고 지난 9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 모집한 1,093명의 현지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 국내에 입국시킨 뒤 미군부대 주변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업주 234명으로부터 사례비로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인력송출 브로커 권모(51·서울 강남구 신사동)씨 등 6명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일부를 빼앗는 수법으로 262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현지 접대부 여성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한국특수관광협회의 초청으로 국내 공연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공연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와 출입국관리소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사증발급 인증서를 받아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3. 현재 가능한 구제수단과 그 한계

가. 매춘업소에서 탈출하려는 여성들

매춘여성들이 매춘업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의 단속, 개인적인 탈출 노력, 그리고 드물지만 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매춘여성들이 업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하여 너무나 한계가 많다.

● 정부의 단속

정부의 단속으로 경찰서로 끌려간 여성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학대 행위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업주들과 대면하기도 하고, 심지어 업주들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조사

를 받는 과정이나 조사를 받은 후에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아무 대책이 없이 경찰서로부터 나오면 이미 경찰서밖에는 이들을 다시 업소로 끌고 갈 폭력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개인적인 탈출 노력

업소의 학대나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치는 여성들이 있다. 대부분은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게된다. 그러나 업소에서 탈출하게 되면 포주들은 그 여성의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폭력배를 동원해서 찾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다시 다른 지역의 매춘업소로 숨어들게 된다.

● 단체의 지원

매춘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단체들은 매춘집결지에서 직접 여성들을 만나고 상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경찰의 의뢰나 전화신고를 통해서 매춘여성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이 매춘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문적인 상담 경험이 부족하고 탈매춘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탈매춘의 희망을 가지고 단체의 도움을 기대했던 여성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면 업소의 협박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탈매춘을 포기하고 또다시 업소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나. 미군범죄 피해자 여성들

미군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새움터는 기지촌 지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기지촌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 관계를 유지하여 범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으로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증언을 모아서 경찰에 알리며,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피해자 여성을 상담하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버린다.

이러한 상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며 피해

자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에서는 미군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 신병 확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 예방의 선결 조건인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의 범죄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한국 경찰이 매춘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번 반복되는 한국경찰의 이런 무성의 한 태도를 보면 업주나 미군부대와 유착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

다. 혼혈아동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어머니의 직업과 연관된 도덕적 낙인’은 이 아동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을 힘겹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혼혈아동들은 일양이 되고 있다.

새움터는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혼혈아동을 위하여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혼혈아동의 어머니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방과후보육, 상담, 장학금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혼혈아동 상황을 비교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에 혼혈아동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예를 들면 미국이 독일과 맷은 협정에는 독일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가진 미국 군인이 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귀국해버릴 경우 미군 당국이 ‘아버지를 찾는데 협력하고 아버지에게 양육 책임을 지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라. 외국인 매춘여성들

아직 한국 내에는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나 민간단체가 전무하다. 소수의 여성단체나 이주민 노동자 단체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특별한 대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국내외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새움터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지촌의 외국인 여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귀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새움터와 같은 유입국의 민간단체와, 송출국인 필리핀의 민간단체가 연대하여 진행한다.

유입국	송출국
귀환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일시 도피처 제공	제취업 프로그램
생계비 지원	정보 제공
법률 / 의료 지원	상담 프로그램

현재, 새움터에서는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상담,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문제 제기,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회 여성연합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4. 국가인권기구의 성립시 활용방안

가. 개인인권침해 구제기능

- 매춘업소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매춘여성에 대한 구제 및 성매매 조직에 의해 착취당하는 외국인 여성 구제

매춘여성들이 범죄자로 취급받는 현 상황에서는 매춘여성들이 업소로부터 착취나 학대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또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업주들에게 신변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업소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매춘여성들이 경찰을 믿고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가 매춘여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제절차에서 매춘여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민간단체들의 종합적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다면 많은 매춘여성들이 인권침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제기능이 마련된다면 매춘여성들은 경찰이나 정부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민간단체를 통하여 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군범죄피해

미군범죄가 일어날 경우, 한국경찰은 SOFA협정의 한계를 말하면서 미군측에 책임을 돌리고, 반면 미군수사대는 한국경찰에게 책임을 돌리곤 한다. 미군부대의 담당자에게 면담요청을 해도 전혀 답변을 들을 수 없고, 한국 정부는 민간 단체에서 더욱 열심히 하라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 미군부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지곤 한다. 게다가, 경찰은 관련 민간단체나 피해자 본인에게 조차도 수사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미군범죄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즉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인권현장 불시 시찰

● 매춘여성 수용시설에 대한 불시 시찰

정부는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매춘여성들의 직업재활보다는 공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매춘여성들을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1995년의 기술원방화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서울여자기술원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이 비인간적인 상황을 항의하면서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다.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이 불을 지르는 것으로 항의를 한 이유는 구제 신청의 길이 막혀 있었고 정부는 형식적인 감사만 할 뿐 전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의 불시시찰 활동을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불시 시찰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은 인권위원회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매춘여성 및 혼혈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 매춘여성 실태조사 및 외국인 매춘여성의 실태조사,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차별 실태조사

매춘여성과 관련한 실태조사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매춘여성들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연구자나 민간단체가 매춘여성에게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 자체가 위험하거나 한계가 많은 부문은 위원회에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라. 인권 법제 및 정책 연구

● 다른 나라의 인권법 연구

다른 나라의 법률을 연구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예를 들면 외국군대 주둔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 연구, 매춘여성에 대한 다른 나라의 법률 연구, 외국인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행위 처벌 및 자립지원에 대한 법률 및 정책 연구,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SOFA협정 비교 연구 등이다. 특히 SOFA협정의 경우 최근 개정논의가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다. 이러한 부문은 인권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인권위원회나 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소송참가 및 의견제시 기능

● 미군범죄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지원

바. 인권 관련 행정지침 제정

● 공공기관 인종차별 금지지침 제정, 취업시 인종차별 금지지침 제정

사. 국회에 대한 법률 개정 권고

●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권고,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권고

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관행 개선 권고

● 매춘지역에 대한 허위보고 관행 개선

최근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매춘관련 실태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춘집결지를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매춘여성의 수를 줄여서 보고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를 취합하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자체의 보고서는 정부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는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여 개선되도록 할 수 있다.

자. 인권 교육

● 매춘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시민 교육

- 매춘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차. 국제 인권기관과의 협력

국내의 인권문제 중에서 기지촌 여성 및 혼혈아동,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과 같은 인권문제들은 국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의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 대한 혼혈 아동 양육비 소송 및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5. 공대위 인권위원회 법안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제시

* 지역에 대한 고려와 접근 가능성

한국사회는 중앙(서울)과 지방의 사회적, 문화적 편차가 심하고, 지자체도 재정 자립도나 사업 규모의 편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많이 한정되어 있거나, 피해자들이 심하게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역의 민간단체들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매춘집결지에 고립되어 있는 매춘 여성들의 경우 공식적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 물론 위원회의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역에 고립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할 때 지방 사무소는 필수적이다. 만약, 재정 문제로 지방 사무소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면, 지역의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을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 159~167

▷ III분과 · 6일(09:00~09: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 침해 사례와 문제점

신현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제1조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대칭되는 두 가지 목적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주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법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 특히 경찰이 후자 즉,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에만 충실한 나머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방치되는 상황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이다. 집시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제약 당하고, 부차적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만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이 신고에서부터 처벌까지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과정에서 대다수 집회가 왜 위법한 집회로 변질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선 행정

*민주노총 정의국장

기관이 집시법의 적용과 운영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의 관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함으로써, 대다수 집회를 위법한 집회로 변질시켜, 결국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들어 실제로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시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위와 같은 운영실태는 셀 수 없이 많다.

1. 실질적인 신고제로 전면 개정(포괄적 금지 규정의 전면 삭제 및 개정)

헌법 21조 제2항에 의하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집시법의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만으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최대한 허용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거꾸로 집회는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특정한 경우에 정부(경찰)의 처분에 의해 허용하고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제10조(옥외 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제11조(옥외 집회 및 금지장소),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등이다.

제10조의 경우 일출시간 전과 일몰시간 후에는 어떠한 집회라도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정부가 이 조항을 법조문 그대로 적용해 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제10조 단서조항에는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 관할경찰 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발제자가 아는 한 번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러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서도 별탈이 없었던 것은, 단서조항 말머리에 '다면,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라는 문구와 '~관할 경찰서장은 ~'라는 문구 때문이다. 집회 성격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하는 한 주최자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 신고한대로 집회를 하기란 하늘에 있는 별따기 보다 어렵다.

제11조는 그 유명한 100미터 조항인데, 이 조항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이

전면 삭제해야 한다. 최근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기각된 것은, 더 이상 이 조항을 지키지 말라는 뜻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서울시의 경우 15개 지역 42개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 15개 지역 42개 도로를 지도상에 별도로 표시해 보면 4대문 안에서는 송곳 세울 자리도 없다. 결국 경찰이 의사에게 뺨맞고 노동자에게 화풀이한 것처럼, 노동자들도 남대문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하라는 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 집회를 항상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 2항에는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질서유지인을 붙여서 행진할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집회, 시위가 절대 불가능하지는 한다. 바로 여기에 원천적인 모순이 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집회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항상 질서유지인 명단을 덧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집회는 이미 금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 주요도로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정한 이유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집회를 금지 혹은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와 시간에 결정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만든 조항인 것이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역시 관할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특히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될 때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이유는 제11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를 무한정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이 정한 주요도시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청와대 인근 도로,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경찰청 정문, 각 시도 경찰청 정문, 경찰서 정문 등 주요 관공서 정문이외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싶은 장소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2. 48시간 규정 일부 개정(교통소통을 위한 경찰의무 강화)

신고 절차 가운데 우선 지적하고 싶은 조항은 제6조 48시간 규정이다. 많은

집회가 미리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집회와 시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 남한 민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그렇지 않다. 때로는 급하게 집회를 치뤄야 하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집회시작 48시간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은 일부 개정해야 한다.

우선 행진이 없는 집회의 경우 서면 혹은 전화상으로 즉시 집회를 개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자본과 권력의 횡포는 무한정으로 보호받고,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법전에서 깊은 잠에 빠진, 그래서 모든 정치적 상황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해 볼 때 48시간 규정의 개정은 절실하다.

여기서 서면 혹은 전화상으로 즉시 집회를 개최하되 행진이 없는 집회로 제한 한 것은 우리나라 집회의 특징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집회가 일상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보편적 방식 가운데 하나인 집회·시위를 한에 있어서, 우리의 대규모 대중 동원력이 아직까지 상실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와 같은 제한적 조항이 필요한 것은 대규모 집회를 불시에 자주 하게 될 경우 해당 집회에 이해 관계가 없는 국민들의 불편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6조 48시간 규정에 추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통소통을 위한 경찰의 의무 규정이다. 이는 대규모 군중 집회가 많은 우리나라 집회 특징과도 관련된 것이다. 집회 및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라는 것은,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미리 대비를 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비 가운데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말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집회 특징상 대규모 군중 시위가 주를 이루고, 평소에도 체증이 심한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가 잦은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소통을 위한 사전 조치는 절실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이 집회를 앞두고 취하는 조치라고는 교통방송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진을 포함한 집회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집회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량의 흐름을 외곽으로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차도를 개방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원거리에서부터 차량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집회가 있는 경우에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 경찰은 다수가 모이는 어떤 집회에서도 사전에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집회주변 사전 예고, 주요도로 통행차량에 대한 사전 공지, 행사 당일 우회도로 유도 등 경찰이 해야 하는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체증을 고의적으로 방치 혹은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인도 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차도에 경찰 호송차량을 1렬 2열로 주차해 두고 버스 승하차까지 방해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 교통질서를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그 불만이 집회 주최자에게 향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4월 29일 노동절 집회다.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대오가 종묘공원으로 행진을 하면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심했는데, 이를 경찰이 부추기느라고 서울역 위를 지나는 고가 차도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후에도 자주 목격되었다.

사태가 이런에도 최근 경찰은 편법적인 여론조사를 동원하여 도심시위를 하는 집회 주최자에게 교통혼잡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3. 신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운영상의 문제)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와 시위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 신고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하면 된다. 그렇다고 신고절차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신고를 해본 사람다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민원실에서는 직접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아무리 필요한 서류를 완전하게 준비해서 민원실에 접수하려 해도, 민원실에서 정보과를 거치지 않은 신고서 접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집회 신고 과정의 첫머리부터 경찰이 모든 집회의 내용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집회 장소와 시간이 중복되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정보과에 문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집회 신고시 정보과를 거치게끔 하는 더 큰 이유는 집회 전체에 대해서 경찰이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 행사진행 내용, 준비물품, 행진방법 등을 점검하게 된다. 결국 경찰이 허용하는 범위로 집회내용을 수정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집회를 하게 되는 꼴이 된다.

집회시간, 장소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전화로도 충분하다. 조금은 불편하고 보완통보에 하나하나 응해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시간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고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경찰이 민중진영의 집

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

3 - 1. 신고서류의 문제

우선 신고 서류에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신고사항이 지나치게 많다.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소요시간 포함)·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연설주제·참가예정단체·참가예정인원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시위의 대형·차량·화성기·입간판·구호제창 여부·행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행사지, 도착지)·행진약도·행진방법(차도, 인도, 교차로 통행방법)·연좌시위 등 중간행사 방법을 서면으로 집회 시작 48시간 이전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고사항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항의 판단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과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것이다.

집회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집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찰서에서 이 규칙에 의하지 않은 서류 양식까지 구비해 놓고 신고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각서라는 것이다. 이 각서가 변형된 형식으로 강요된 시기는 대략 98년 5월 1일 노동절 행사 이후부터인데, 주로 한총련등 학생의 참여를 막고 불법적인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빌미로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서 이외에도 갖가지 서류를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고자가 작성하도록 정한 양식은 신고서와 주최단체 대표자, 질서유지인, 연사, 참가단체 등 명단을 정리한 양식 두 가지뿐이다. 그 외 서류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3 - 2. 일요일 혹은 공휴일의 집회 신고

우리가 하는 집회는 미리 예정해서 열리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시간에 닥쳐서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휴일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자주 집회를 하는 단체는 그나마 신고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나 처음 집회를 하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경우 휴일에는 집회신고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기가 꽤나 어려운 편이다.

3 - 3. 집회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양 당사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경

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양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의도한 경우다. 앞의 경우 신고한 양 당사자가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양해를 하게 되면 집회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2항). 그럼에도 경찰은 이미 집회 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면 무조건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집회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처음 신고한 주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서 신고한 집회 주최자가 뒤에 신고한 집회가 방해되지 않는다고 양해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인데, 주로 집회 시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 성격상 다른 각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집시법을 철저하게 악용한 것으로 최근 삼성재벌, 롯데재벌 등 재벌회사가 스스로 혹은 대리인을 내세워 이 방법을 많이 악용해 왔는데,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장기간 집회 신고를 하는 등 갈수록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3 - 4. 시위용품

집시법에서는 시위 용품을 특정해서 금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14조 주최자 준수사항에서 총포 화약류를 사용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시위용품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복, 상여, 만장, 죄수복, 천막 등인데 최근에는 시위 차량과 복장까지 제한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 집회는 그 성격에 따라서 활발하고 즐겁게 진행하는 집회도 있고 때로는 엄숙하고 진지한 집회도 있게 마련이다. 집회 용품은 주최자가 그 성격에 맞게 준비하고 시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 5. 집회장소의 경찰관 출입에 대해서

90년 초까지만 해도 집회 장소에 경찰관이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관이 집회장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오에 섞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경찰관은 집회가 잘되도록 협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은 정보수집이 주된 목적이고, 이 결과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일

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보고되는 것이다. 법 제1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반드시 정복을 입고 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 통보한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복 경찰이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집회 장소 주변에서 사복입고 사진을 찍는 정보원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할 것이다.

4.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집시법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법의 적용과 운영의 주체도 경찰이고 중요한 판단의 주체도 경찰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아무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 적용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한다고는 하나, 이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일고 있는 집시법 개정 논란이다.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쪽은 경찰인데 그 시기가 바로 5월 1일 안암동 집회 후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5월 1일 고려대학교 앞에서 김대중 정권 이후 최초로 화염병이 등장했는데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시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억지로 해석하자면 집시법 개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동안 최루탄을 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교통혼잡금을 물리겠다는 경찰 발표는, 이유를 막론하고 집시법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찰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자, 이제까지 집시법을 악용해 온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집시법을 악용하는 마지막 단계는 강제 해산이다.

집회를 하다 보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사전 예고를 통해 해산 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해산에 나서는 경우 대부분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과잉진압에 해당한다. 이 때 과연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적 진압 방법이 적법한 것인가?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학계에서 일반화된 공권력 집행 원칙 가운데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사용 정도는 공권력의 행사 직전 발생한 위협 정도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진다 해도 그 행위의 위험 정도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맨몸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열이, 그 행진 과정에서 일부 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최루탄을 쏘고 강제로 해산시켜서는 안되는 것처럼, 중간행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무장 경찰이 시위대열로 뛰어 들어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이 절대 지키지 않는 원칙이 바로 이 비례성의 원칙이다. 무장한 경찰이 시위대열로 뛰어 들어 강제로 해산을 해야하는 경우는 현존하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비교적 평화적인 시위대열 가운데서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에 나선다. 경찰이 발표하는 불법 폭력 시위라는 것은 바로 이 때 발생하는 저항과 자기 방어를 말한다. 이 때 발생하는 그 어떤 소극적 방어행위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같은 법 집행의 일방통행은 수많은 집회를 불법집회로 둔갑시키고, 경찰은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가장 절실한 인권은 불법적인 경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이다.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집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pp. 168~172

▷ III분과·6일(10:00~10:50)

동성애자에게 국가인권위란 어떤 의미인가

최이연

1 한국 동성애자의 인권상황

한국에서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금지, 억압하는 법률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또한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기구나 보장 장치가 전혀 없다는 말도 된다. 사실 동성애자는 이 땅에서 가장 인권문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다. 국가권력 및 이 사회의 주류 질서는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접근을 시민적 차원의 인권적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 또는 종교적 측면 즉 정상인과 변태라는 기준으로만 접근해 왔다.

따라서 혐오범죄, 따돌림, 차별, 해고등 동성애자에 대한 구체적 인권피해사례를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문제 중 성적 지향은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풍토에서는 시기상조라 하여 줄곧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다, 이번 당정협의안에서 성적지향 부분을 평등권 침해사례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성적 지향부분의 인권침해 사례에서 기초적인인식이나 통계, 사례취합 등에 전무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모든 동성애자의 기대가 한 곳에 모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가, 성적지향 부분이 인권보장 차원에서 시기상조라는 인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국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이등시민 내지 국외자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적극 보장해야되는 현상황에서 정부가 자국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4 ~ 10%)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2)동성애자 인권연대의 투쟁방향 및 성과

이렇듯 열악하기 그지없는 동성애자의 인권상황에서 동성애자 인권연대(동인련)은 단순한 도덕적,문화적 차원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자를 차별,억압하는 구조를 깨트릴 수 없다고 보고, 보다 근본적인 정치억압 구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즉 한국의 전사회적인 억압구조가 동성애자 억압구조와 맞물려 있으며, 여성, 노동자 청소년·유색 인종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동성애자가 침묵하는 것은, 결국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의 통로를 열어줄 것이고, 역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에 여성, 노동자들이 외면한다면 결국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동인련의 투쟁방향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의 상담, 교육, 홍보등 동성애자의 자긍심과 억압현실에 대한 각종 캠페인과 이슈 제기 작업과 더불어, 현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동성애자의 입장과 견해를 적극 표명하게 되었다. 그중 노동자와 연대집회, 국가인권위 설치관련, 매향리 문제 등은 동인련이 주력하고 있는 외부 연대 사업이다.

이러한 동인련의 노력으로 몇몇 성과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 개정운동이다.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 교련 보건 등의 과목 교과서에서, 동성애자를 에이즈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변태적 성행위로 매매춘과 같은 개념으로 기술한 악의적 왜곡 내용에 대항하여 동인련은 이석태 변호사와 더불어 교과서 개정 소송을 준비하였다.

그 준비단계로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신청으로 요구하였는바, 의외로 99년 12

월 교육부는 교과서 개정시 문제 부분을 삭제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에게 강제 유포되어 온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는 주요한 계기라 보여진다.

그리고 93년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후 문화분야에선 일정 정도의 동성애자들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퀴어영화제나 동성애자 전문잡지 발간, 출판사업등이 대표적이나, 전사회적인 편견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외 동인권인 전개해 온 주요 사업은 동성애자의 군입대 문제를 비롯한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자 문제, 에이즈 왜곡 투쟁, 노동 법 개정운동, 동성애자 차별 해고 문제, 청소년 동성애자 문제 등이다.

3)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 가정, 학교 및 직장에서의 따돌림, 폭력, 해고 문제
- 교과서 내 왜곡 및 차별적 내용
- 동성애자 관련 출판물에 대한 탄압
- 동성애자가 가해자인 경우 관습적 법 적용 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 문제
- 영화 등 표현의 자유에서 동성애 문제는 금기시(해피투게더, 숙희 경희 등)
-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혐오범죄에 무방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웨лен 주니어 피살 등 동성애자라는 정체성만으로 입는 피해는 생존을 넘어, 생명의 위협에 이르는 수준에 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억압으로 동성애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to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경.검찰 및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처리와 심지어 편견으로 인한 불리한 처분으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인권문제를 국가기관에 호소, 보호 받으려는 노력은 대부분 포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출현과 피해보장 장치는 동성애자에게 생명

과 직결된 중요한 의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단체 심지어 국가 인권기구 설립 준비위 내부에서도 초기 논의 단계에서, 동성애자 문제를 시기 상조라고 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4) 국가인권위 활용 방안

동성애자에 관련 된 인권문제는 한 인간이 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인권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인권피해사례나 구제 및 활용방안은 국가인권기구가 지향하는 모든 인권보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중 주요한 몇가지 방안을 듣다면,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과 해고문제이다. 동성애자인 것이 드러나 받는 인격적 모욕과 폭력, 나아가 생존권 위협은 동성애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성애자가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은 선뜻 자신의 피해를 방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폭력이나 해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과 직장 관련자의 편견과 문제 축소 및 심지어 본질의 왜곡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공정한 조사 및 문제 처리의 감시자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일상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동성애자 인권단체의 역할은 상담 및 피해 접수 차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인권위가 제도적인 피해 보상차원의 대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각급 학교와 직장 특히 공공기관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규정에 대한 감시와 차별 금지와 관련한 교육 및 권고 등을 실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2. 평가 및 전망

국가인권기구에 거는 동성애자들의 기대는 크다.

한국 역사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자 문제가 거론되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론과 격정스런 전망도 만만치 않다. 혹여 동성애 문제를 전체 인권문제의 차원이 아닌, 개인의 성취향 문제로만 인식하는 분위기에서 각 인권단체들이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인권위원 및 조정·자문위원 선출에 있어, 여성을 제외한 우리나라 소수자들에 대한 별다른 배려장치가 없는 것이 아쉽다. 혹여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그리고 몇몇 명망있는 인권단체의 지도자들만이 인권문제의 전문가라고 인식하는 전제위에, 앞으로 국가인권기구 인적구성이 정부 의도대로 폐쇄적 인적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및 다른 인권문제는 일단 사회적으로 합의 도출에 도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동성애자 인권문제는 아직 본격적 논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혹여 국가인권기구에서 평등권 문제에서 성적 지향을 받아들 이더라도, 그 구체적 인권 침해 및 피해사례 조사 및 구제 조치 시 동성애자 단체 당사자는 제외시킨 가운데, 이제까지 언론 등이 자행해 온 정신병리학자 를 대동한 전문가적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조사자문 및 청문회와 법원에서 한국에서 어느 누가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나서려 할 것인지, 아니 내세우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동성애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안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말한다. 다만, 이 법 제4장에 의하여 조사와 구제의 대상이 되는 인권은 그 장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국제인권조약”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였거나 가입·비준할 수 있는 국제조약 중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구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2.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3. 군교도소, 군구치소 및 현병대에 설치된 영창

4. 외국인보호시설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

- ④ 이 법에서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임의시~~도~~는 통~~행~~할 수 있을 듯
- ⑤ 이 법에서 “시설수용자”라 함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관계기관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자료 등”이라 함은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제출요구, 검증, 감정, 영치의 대상으로 삼는 문서, 자료, 물건 등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당사자”라 함은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진정을 한 진정인,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을 한다.
- ⑨ 이 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회의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보, 자료 등, 장소 또는 시설 등을 알고 있거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소속기관 등”이라 함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속해 있거나 그들에 대하여 법령상 또는 사실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및 인권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③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인권위원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위원 중 6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5조 【인권위원의 임명】 ① 인권위원 중 5인은 대통령이,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인권위원의 임명·추천에는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위원의 자격】 ①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사회의 신망이 높은 사람 가운데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추천 한다.
- 임명·추천에 신경~~여~~지~~여~~ 않아야

② 대통령과 국회는 임명 또는 추천하는 인권위원 중 여성을 각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각 3인의 상임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상임 인권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④ 인권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인권위원의 임기】 ①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인권위원이 결석이 된 경우, 후임자는 결석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④ 결석이 된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임명과 직무】 ① 위원장은 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처를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 인권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신분보장】 ① 인권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장기의 질병이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인권위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재직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된다.

③ 제2항의 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의 당원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

람

6. 그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인권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 【전체위원회】 ① 위원회에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를 둔다.

② 전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거나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④ 전체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인권위원 재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는 이 법, 위원회 규칙과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분장사무, 직제 및 정원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소속 직원은 별정직, 계약직 또는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사무총장 및 소속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과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 배치, 휴직, 면직 또는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속 직원의 구분, 직급, 채용조건, 임용절차, 임기, 복무,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 등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징계의 사유와 종류, 심의절차와 운영, 이의신청과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의결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18조 【지방사무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사무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인권연구기관】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방안,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연구·조사·교육을 위하여 인권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예산 및 회계감사】 ①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은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판서의 장으로 본다.

② 예산기관이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 및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서 제외한다.

제21조 【비밀준수의무】 인권위원 또는 인권위원이었던 사람,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조정위원 또는 조정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등, 전문가, 감정인 또는 그밖의 사람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 【업무】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법령안에 관한 자문 또는 권고
2.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와 권고
4.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의 제시와 권고
5.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여부와 국제인권조약을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사·연구와 권고
6. 인권교육과 홍보
7.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와 권고
8. 인권단체·국제인권기구·다른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9. 그밖에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국가기관의 협의의무】 ①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법령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위원회는 국회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자문·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작성 지원】 ①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인권상황의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 정부 기관에 대한 청탁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방문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전문가 또는 그밖의 사람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모든 장소와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관계자 또는 시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인권위원 등은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장에게 면담·진술 또는 서면의 작성사실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내의 일정한 장소 또는 상황에 관하여 검증을 하거나 조사한 자료 등의 원본 또는 등본,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⑦ 그밖에 이 조에 의한 방문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수용자를 시설에서 빼내는 것!~~

제28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제2항에 의한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 또는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제2항에 의한 관계 기관의 이행내용 또는 이행계획, 제4항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 【일반지침의 작성과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분야에 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판단기준, 인권의 침해를 예방하거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해야 할 조치의 내용,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할 경우, 관계기관 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침을 공표하고,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 【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인권자료실】 ① 위원회는 그 산하에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매체 등을 수집·정리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인권자료실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

④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재판의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은 제1항의 보고서와 제2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 조치사항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제36조 【조사대상 인권침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그밖에 정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 [시설수용자의 진정]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 등은 진정서의 작성사실과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인권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위원회의 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위원회로부터 그 통보에 대한 확인서와 면담일정서를 발급받아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인권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회 등은 즉시 접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인권위원 또는 직원의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⑥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국회의 국정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법원/인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해석되어

• 헌법재판소를 막을 우려가 있을 때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 그 진정을 조사 또는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진정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을 받은 기관은 그 진정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그 진정이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9조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제출된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36조에 따라 진정이 제기된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뢰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2.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제출된 자료 등의 영치

3.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련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에 당사자, 관계인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인권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조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치한 자료 등의 목록, 그 대상자, 검증 또는 감정을 한 장소, 시설, 자료 등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관계인, 그 가족, 동거인, 고용인 또는 피고용인, 관계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증인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의 절차와 내용을 기재한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이 조에 의한 검증,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3절, 제5절, 제6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인에 관한 절차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 【질문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41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 【인권위원의 제척 등】 ① 인권위원과 제48조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위원이 진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진정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2. 인권위원이 당사자와 호주, 가족,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인권위원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인권위원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인권위원이 진정에 관한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한 때

② 당사자는 인권위원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권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자신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은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 【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진정에 대하여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 【조정】 ① 위원회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45조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절차를 시작한 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다음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3. 원상회복, 손해배상, 손해보상,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4.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조정의 효력】 제46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성립한 조정과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8조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회부한 조정을 심의·의결한다.

③ 조정위원 중 3인은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의 위촉,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 【임시조치 등】 ① 위원회는 진행중인 인권침해를 중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또는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당해 직무배제

6.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정인, 참고인 또는 증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소속기관 등 또는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사항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피해자를 위한 소의 제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를 위하여 위원회의 이름으로 관할 법원에 필요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의 제기는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9조 제2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또는 군 참모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51조 또는 제52조에 정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정당한 시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법률구조】 ① 제46조 제6항에 따라,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에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권리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법

를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구조법 제4조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에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공하는 법률구조의 절차,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이 장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와 조정 및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7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위원회의 책임면제】 위원회, 인권위원, 조사위원, 위원회 소속 직원,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민간단체 또는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9조 【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 【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 절차와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민간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민간단체의 관계자는 그 업무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6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별칙

제62조 【별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서의 작성·제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람

2. 제27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

3. 제41조에 의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사람

4. 제59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불이익금지*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에 위반한 사람 *위반금지*

2.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진정서의 작성사실 및 그 내용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비밀침해금지*

3. 제37조 제3항에 위반한 사람 *검정서 허위*

4.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5. 제49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조치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람

3.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질문에 허위의 답변을 한 사람

제63조 [허위진정의 죄] ① 제36조에 의한 인권침해의 조사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제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37조 제6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구금시설 또는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사람

② 제60조에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이 조에 의한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하고 법무부장관이 징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위원회는 즉시 그 결정문을 법무부장관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65조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 또는 징계요구에 관하여는 제52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인권위원의 임기】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임명되는 상임 인권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2인, 비상임 인권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추천하는 각 1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직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예상되는 위원회의 활동내용, 사무처의 조직, 예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제기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권력에 의하여 생명권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의 경우, 이 법 시행일을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에 제4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 3 [인권특별위원회] (1) 인권의 보호와 향상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권특별위원회를 둔다. (2) 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인권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②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人 權 法(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人權委員會를 設立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를 구현하고 民主的 基本秩序의 確立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值 및 自由와 權利를 말한다. 다만, 이 法 第4章에 의하여 委員會의 調查와 救濟의 대상이 되는 人權은 그 章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다음 각目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가.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保護監護所, 治療監護所, 少年院 및 少年分類審査院

나. 警察官署에 설치된 留置場

다. 軍矯導所, 軍拘置所 및 憲兵隊에 설치된 營倉

라. 外國人保護所

마. 多數人保護施設

3.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의 사람을 保護·收容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人權委員會의 設立과 獨立性) ①이 法이 정하는 人權의 保護와 향상을 위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委員會는 立法·司法·行政機關 등 모든 國家機關으로부터 獨립된 人權機構로서 業務와 財政의 獨立은 물론 그 구성원의 신분도 보장되어야 한다.

③委員會는 人權과 관련된 모든 國家機關의 活動을 監視·補完한다.

第4條(適用範圍) 이 法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外國人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2章 人權委員會의 構成

第5條(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1人の 人權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6人の 委員은 이를 常任으로 한다.

②委員은 社會의 信望이 높고 人權問題에 관한 專門的인 知識과 경험이 있는 者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되, 그 任命에는 人權問題의 多樣性과 專門性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委員중 6人은 國會에서 推薦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委員長은 委員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중 3人이상은 女性으로 任命한다.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가 委員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女性을 2人以上 포함시켜야 하고, 常任委員 3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⑦委員長 및 委員은 任期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6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7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①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委員의 任期가 만료되거나 任期中 委員이 缺員된 때에는 任期滿了 또는 缺員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後任者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가 추천한 委員이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중에 任期가 滿了되거나 委員이 缺員된 때에는 國會는 다음 集會가 개시된 후 30日이내에 後任者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缺員이 된 委員의 후임으로 任命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8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나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다만, 委員이 身體상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遂行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

우에는 전체 委員 3分의 2 이상의 賛成에 의한 議決로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9條(委員의 缺格事由)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
 3. 公務員(教育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
- ② 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第10條(委員의 報酬와 禮遇) 委員의 報酬와 禮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11條(小委員會) ①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委員會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小委員會는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の 委員으로 구성하며, 權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③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12條(會議 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② 小委員會의 會議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小委員會 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③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지명하는 者가 회의를 主宰한다.

第13條(議事의 公開) 委員會의 議事는 公開한다. 다만, 委員會 또는 小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4條(諮詢機構) ① 委員會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諒問을 위하여 諒問機構를 둘 수 있다.

② 諒問機構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15條(事務處) ① 委員會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두며 委員長이 임명한다.

이 경우 事務總長을 임명할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③ 事務總長은 委員長의 명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統轄하고 소속 직원을 指揮·監督한다.

④ 事務處의 運營과 事務總長 및 소속 職員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16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 懲戒委員會의 構成, 權限, 審議節次, 懲戒의 종류 및 效力 기타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17條(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宣告·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則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退職·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18條(地方事務所) ①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事務處 산하에 地方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地方事務所의 설치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19條(出捐金의 교부) ① 國家는 委員會의 設立·施設·運營 및 業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豊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는 매년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조정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요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20條(資格詐稱의 禁止) 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祕密漏泄의 禁止) 委員會의 委員, 諒問委員, 調停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委員會에 파견되거나 委員會의 委屬에 의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資는 業務處理中 知得한 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2條(類似名稱使用的 禁止) 委員會가 아닌 者는 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3條(委員會의 運營) 이 法에 규정된 사항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3章 委員會의 業務와 權限

第24條(業務)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업무를 수행한다.

1. 人權에 관한 法令(立法過程중에 있는 法令案을 포함한다) · 制度 · 政策 · 慣行의 調查와 研究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의 表明
2. 人權侵害行爲에 대한 調查와 救濟
3. 差別行爲에 대한 調查와 救濟
4. 人權狀況에 대한 實態調查
5. 人權에 관한 教育 및 弘報
6. 人權侵害의 類型 · 判斷基準 및 그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제시 및 권고
7. 國際人權條約에의 加入 및 그條約의 履行에 관한 研究와 勸告 또는 意見의 表明
8. 人權의擁護와伸張을 위하여 활동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9.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 · 協力
10. 기타 人權의 保障과 向上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25條(國際機構에 意見提出)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國際人權條約의 規定에 따라 제출된 政府報告書를 심의하는 國際機構에 委員會의 意見을 제출할 수 있다.

第26條(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委員會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資料 등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照會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第27條(施設의 訪問 및 調査) ①委員會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拘禁 · 保護施設을 訪問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委員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訪問 및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訪問 및 調査를 하는 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委員會 소속 職員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職員에게 調査를 委任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訪問 및 調査를 하는 委員, 소속 職員(이하 “委員 등”이라 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訪問 및 調査를 받는 拘禁 · 保護施設의 長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訪問 및 調査를 하는 委員 등은 拘禁 · 保護施設에 收容 · 保護되어 있는 者(이하 “施設收容者”라 한다) 또는 拘禁 · 保護施設

의 직원을 면담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陳述을 聽取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에 규정된 訪問 및 調査의 節次와 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敘으로 정한다.

第28條(政策과 慣行의 改善 또는 是正勸告) ①委員會는 人權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關係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장에게 政策과 慣行의 改善 또는 是正을 勸告하거나 意見을 表明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 또는 是正勸告를 받은 機關의 長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委員會의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 또는 是正勸告를 받은 機關이 第2項에 의한 이행계획을 작성할 경우 委員會에 諮問 또는 助力を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 또는 是正勸告를 받은 機關의 長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委員會에 文書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改善 또는 是正勸告와 意見表明,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機關의 이행내용 또는 이행계획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第29條(人權資料室) ①委員會는 人權資料室을 둘 수 있다.

②人權資料室은 人權에 관한 國내외의 情報와 資料 등을 蒐集 · 整理 · 保存하여 일박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人權資料室은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에 의한 圖書館으로 본다.

④人權資料室의 設置와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30條(法院 및 憲法裁判所에 대한 意見提出) ①法院 또는 憲法裁判所는 人權의 보호와 신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적인 사항에 관하여 委員會에 意見의 提出을 요청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法院 또는 憲法裁判所가 裁判중인 사건이 人權의 보호와 신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裁判중인法院이나 憲法裁判所의 許可를 얻어 법률적인 사항에 관하여 意見을 제출할 수 있다.

第31條(報告書 作成 등) ①委員會는 해마다 前年度의 活動내용과 人權狀況 및 개선대책에 관한 報告書를 작성하여 大統領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大統領과 國會에 特別報告를 할 수 있다.

③ 關係機關 등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委員會에 제출할 수 있다.

④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書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의 安全保障, 個人的 名譽 또는 私生活의 保護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法律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第4章 人權侵害의 調査와 救濟

第32條(委員會의 調査對象) ① 다음 각號의 경우에 人權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被害人”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委員會에 그 내용을 陳情할 수 있다.

1. 政府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多數人保護施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憲法 第10條 내지 第22條, 第24條 내지 第28條 또는 市民的·政治的權利에 관한國際規約에 정한 人權을 침해당한 경우

2. 法人, 團體 또는 私人에 의하여 平等權侵害의 差別行爲를 당한 경우

②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 宗教, 나이, 障碍,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出身國家, 出身民族, 容貌 등 신체조건, 婚姻與否, 嫣娠 또는 出產, 家族狀況, 人種, 皮膚色, 思想 또는 政治的 意見, 敍免되거나 刑의 效力이 失效된 前科, 婦의 品向, 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平等權侵害의 差別行爲로 본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優待를 差別行爲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差別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募集, 採用, 教育, 配置, 升進, 賃金 및 賃金외의 金品 지급,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3. 教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優待·排除·區別하거나 불리하게 待遇하는 행위

③ 委員會는 第1項의 陳情이 없는 경우에도 人權侵害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職權으로 調

查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陳情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3條(施設收容者등의 陳情權 保障) ① 施設收容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公務員 또는 職員(이하 “所屬 公務員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陳情書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施設收容者가 委員 또는 委員會 소속 職員의 면전에서 陳情하기를 원하는 경우 所屬 公務員 등은 즉시 그 뜻을 委員會(地方事務所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所屬公務員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收容者가 작성한 陳情書를 즉시 委員會에 送付하고 委員會로부터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委員會로부터 면담일시가 지정된 接受證明書를 발급받아 陳情을 원하는 施設收容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施設收容者가 陳情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委員會는 委員 또는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拘禁·保護施設을 방문하게 하여 陳情을 원하는 施設收容者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陳情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陳情을 접수한 委員 등은 즉시 接受證明書를 작성하여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所屬 公務員 등이 行刑法 또는 軍行刑法의 規定에 따라 職務상 陳情書의 閲覽이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收容者の 면담에 관여한 경우 그 내용을 그 職務와 관련이 없는 者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 또는 職員의 拘禁·保護施設의 訪問 및 陳情의 접수에 관하여는 第27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 施設收容者の 자유로운 陳情書作成과 提出을 보장하기 위하여 拘禁·保護施設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34條(陳情의 却下 등) ① 委員會는 접수한 陳情이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1. 陳情의 내용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陳情의 내용이 명백히 虛偽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被害者가 아닌 者가 한 陳情에 있어서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陳情原因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年以上 경과하여 陳情한 경우. 다만, 委員會가 調査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陳情原因이 된 사실에 관하여 陳情이 제기될 당시 國會의 國政調查 또는 國政監查가 진행중인 경우, 法院 또는 憲法裁判所에 裁判이 繫屬중이거나 搜查機關의 搜查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경우
 6. 陳情이 匿名 또는 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陳情人이 陳情을 取下한 경우
 9. 委員會가 棄却한 陳情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陳情한 경우
 10. 陳情의趣旨가 당해 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반하는 경우
 - ②委員會는 第1項第1號, 第4號 또는 第7號의 경우 다른 國家機關이 그 陳情을 調査 또는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고 第1項第5號의 경우에는 國會, 法院, 憲法裁判所, 搜查機關 또는 權利救濟節次가 진행중인 機關에 그 陳情을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移送을 받은 機關은 그 陳情에 대한 調査 또는 處理結果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委員會가 陳情에 대한 調査를 시작한 후에 그 陳情이 第1項第5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調査를 中止할 수 있다.
 - ④委員會는 陳情을 却下 또는 移送하거나 調査를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陳情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被害者 또는 陳情人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 第35條(다른 救濟節次와 移送) ①陳情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權利救濟節次에 따라 권한을 가진 國家機關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陳情을 그 다른 國家機關에 移送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가 陳情을 移送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陳情人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가 요청하는 경우 그 陳情에 대한 처리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第36條(搜查機關과 委員會의 協助) ①陳情의 원인이 된 사실이 犯罪行爲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嫌疑者の逃走 또는 證據의 潤滅 등을 防止하거나 證據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委員會는 檢察總長 또는 管轄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의 개시와 필요한措置를 의뢰할 수 있다.

- 會는 檢察總長 또는 管轄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의 개시와 필요한措置를 의뢰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뢰를 받은 檢察總長 또는 管轄 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그 措置結果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第37條(調査의 目的) 委員會의 調査는 人權을 침해당한 者에 대한 被害救濟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目的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38條(調査의 方法) ①委員會는 다음 각號에 정한 방법으로 陳情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陳情人·被害人·被陳情人(이하 “當事者”라 한다) 또는 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 및 陳述聽取 또는 陳述書 提出要求
 2. 當事者, 參考人 또는 關係機關 등에 대하여 調査事項과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資料 등의 제출요구와 제출된 資料 등의 領置
 3. 調査事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場所, 施設, 資料 등에 대한 檢證 또는 鑑定
 4. 當事者, 參考人, 關係機關 등에 대하여 調査事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事實 또는 情報에 대한 照會
- ②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委員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場所, 施設, 資料 등에 대하여 檢證 또는 鑑定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委員會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當事者나 參考人的 출석을 요구하여 陳述을 들을 수 있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長 또는 職員(이하 이 條에서는 “關係者”라 한다)에게 필요한 資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資料 등을 領置할 수 있다.
-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者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第1項第2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출받아 이를 領置한 경우에는 그 目錄를 작성하여 關係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⑥委員會가 資料 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檢證 또는 鑑定을 요구하는 경우 그 資料 등이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外交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家機密事項인 경우 또는 犯罪搜查나 繫屬중인 裁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國家機關의 長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資料 등의 제출이나 그에 대한 檢證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會는 關聯 國家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39條(委員의 除斥 등) ①委員과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이하 이 條에 서는 “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陳情에 대한 調査와 調停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陳情의 當事者가 되거나 그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당해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때
3.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的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陳情에 관하여 搜查, 裁判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한 救濟節次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當事者は 委員에게 공정하고 獨立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으며 委員長은 當事者の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委員長 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결정한다.
- ③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40條(陳情의 棄却)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을 棄却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져 별도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委員會는 陳情을 棄却하는 경우 陳情의 當事者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41條(合意의 勸告) 委員會는 調査중이거나 調査가 끝난 陳情에 대하여 사건의 公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救濟措置를 當事者에게 제시하고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42條(調停) ①委員會는 陳情에 대하여 人權侵害가 있다고 인정하고 第41條에 의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當事者の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陳情을 調停委員會에 회부하여 調停節次를 시작할 수 있다.

②調停은 調停節次를 시작한 후 當事者가 합의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當事者가 記名捺印하고 調停委員會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調停委員會는 調停節次중에 當事者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

건의 公정한 해결을 위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 ④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被陳情人의 被害者에 대한 사과
 3. 原狀回復 ·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4. 同一 또는 유사한 人權侵害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 ⑤調停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書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當事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异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調停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第43條(調停委員會의 設置와 構成) ①調停의 신속하고 公정한 처리를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調停委員으로 구성되는 調停委員會를 둔다.

- ②調停委員會는 委員會가 회부한 調停을 審議·議決한다.
- ③調停委員 중 2人은 委員 중에서 委員會가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委員會가 위촉하되 非常任으로 할 수 있다.

 1. 人權問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民間團體에서 人權과 관련된 분야에 10年以上 종사한 者
 2. 判事 · 檢事 · 辯護士의 職에 10年以上 종사한 者
 3. 大學이나 公認된 研究機關에서 助教授 이상의 職에 10年以上 종사한 者

- ④調停委員의 委嘱, 任期, 調停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調停의 节次와 方式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44條(調停의 效力)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第42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异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상의 和解와 같은 효력이 있다.

第45條(救濟措置 등의 勸告) ①委員會가 陳情을 調査한 결과 人權侵害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 團體 또는 監督機關(이하 “所屬機關 등”이라 한다)의 長에게 다음 각號의 사항을 勸告할 수 있다.

1. 第42條第4項 各號에 정한 救濟措置의 履行
2. 法令 · 制度 · 政策 · 慣行의 是正 또는 改善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所屬機關 등의 長에 관하여는 第28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6條(告發 및 懲戒要求)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그 내용을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소속 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陳情을 調查한 결과 人權侵害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被陳情人 또는 人權侵害에 책임이 있는 者에 대한 懲戒를 所屬機關 등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을 받은 檢察總長 또는 軍 參謀總長은 告發을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수사결과 또는 수사계획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勸告를 받은 所屬機關 등의 長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47條(意見陳述機會의 부여) ①委員會는 第45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措置를 하기 전에 被陳情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委員會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第48條(法律救助) ①第42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한 결정에 대하여 當事者가 異議를 신청하고 第45條第1項第1호의 規定에 따른 委員會의 勸告에 대하여 所屬機關 등의 長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委員會는 被害者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경우 被害者の 신청이 있는 때에는 被害者를 위하여 法律救助를 결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法律救助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法律救助法人에 被害者를 위한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④委員會가 제공하는 法律救助의 절차·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49條(緊急救濟措置의 勸告)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결정 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の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등의 長에게 다음 각號의 조치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중지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陳情人 등의 拘禁·保護場所의 변경

4. 陳情人 등에 대한 의료, 급식, 회복 등의 제공

5. 기타 被害者나 陳情人, 參考人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措置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 등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받은 관계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권고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50條(調查와 調停 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第51條(處理結果의 公開) 委員會는 이 章에 의한 陳情의 調査 및 調停의 내용과 처리결과, 關係機關 등에 대한 권고와 關係機關 등이 한 措置 등을 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의하여 公表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章 補則

第52條(公務員 등의 派遣) ①委員會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關係機關 등의 長에게 그 소속 公務員 또는 職員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등의 長은 委員會와 협의하여 소속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파견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파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으로부터 독립하여 委員會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파견한 關係機關 등의 長은 委員會에 파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人事 및 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3條(不利益 禁止와 支援) ①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委員會에 한 陳情, 陳述, 證言, 資料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委員會는 人權侵害行爲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54條(委員會와 民間團體의 協力) ①委員會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 절차와 결

과에 관하여 民間團體에 諮問하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第1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第6章 罰則

第55條(人權擁護業務妨害)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委員會의 업무를 수행하는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을 暴行 또는 霹迫한 者
2.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暴行 또는 霹迫한 者
3. 僞計로서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業務遂行을 방해한 者

第56條(虛偽陳情) 虛偽의 사실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7條(陳情書作成 등의妨害)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陳情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58條(資格詐稱)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자격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권한을 행사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9條(秘密漏泄)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知得한 秘密을 누설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60條(訪問調查 방해) 정당한 이유없이 第27條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訪問調查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1條(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1項第1號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2.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1項第2號 및 第4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 등의 提出要求 및 事實照會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資料 등을 제출한 者
- ②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委員會의 設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日 부터 6月 이내에 構成하여야 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設立 당시 任命하는 常任委員 중 大統領이 任命하는 1人과 國會가 推薦하는 2人, 非常任委員 중 大統領과 國會가 任命·推薦하는 각 1人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김재열, 박정기, 성유보, 송두환, 신혜수, 임기란)

• 가톨릭가출청소년쉼자리전국협의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노동인권회관 • 동성애자 인권연대 •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민주열사회생자주모단체연대회의 •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 민주개혁국민연합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 통일전국연합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법률소비자연맹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서울DPI(서울장애인연맹) • 성공회 대인권평화센터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외국인노동자대책 협의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자유 • 평등 • 연대를위한 인권운동센터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NGO연합인권분과위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시민단체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정치개혁시민연대 • 좋은벗들 •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위한운동본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 청년진보당인권위원회 • 포럼2001 • 한국가톨릭사회교육협회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 한국기자 협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한국유 권지운동연합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청년연합회 • 환경운동연합